

#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091 |
|----------|------|

제출년월일 : 2006. 7. .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 정부의 2005.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로부터 확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
- 적정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관리 (제4조, 제5조)
- 부담금의 적정 사용을 위한 부담금의 사용제한 (제6조).

## 3. 근거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법률 제7848호 2006. 1.11 제정]

## 4. 의안전문 : 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붙임 : 1. 근거법령(발췌분) 1부.

2.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관련공문 사본 1부.

○ 충청북도 지역개발과-5036(2006. 5.12)호

3. 입법예고 사본 1부.

##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천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 2006.1.11 법률 제7848호], 시행일 2006.7.12,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도로
  - 나. 공원
  - 다. 녹지
  - 라. 수도
  - 마. 하수도
  - 바. 학교(초·중·고등학교)
  -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라 함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6.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충북을 !



# 충 청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정사항 알림

1. 충청북도 지역개발과 - 3806(2006. 4. 12)호의 관련입니다.

2.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06.1.11일 공포되어 '06.7.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3.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하는 제도로,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는 지자체별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가칭)」를 제정 운영하여야 하므로

4. 동 제도시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도시정책팀)가 마련한 지자체의 특별회계에 기본적으로 담아야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체실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제정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반시설 특별회계제정 관련 참고사항 1부. 끝.

##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더 01-12(도시계획관련 실과장)

★지방건축주사

지방토목사무관

지역개발과장

협조자 지방토목주사보

지방토목주사

시행 지역개발과-5036 ( 2006.05.12. ) 접수 도시개발과-6442 ( 2006.05.23. )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3(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4452 /전송 043) 220-4419 / yoosg60@cb21.net / 공개

##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 참고사항

-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공고 제 2006 - 884호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12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2. 제정이유

-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임

3. 주요내용

-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안 제4조, 제5조)
- 부담금의 사용제한 (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7 월 3 일까지 제천시 장(참조 도시개발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40-5821, FAX 640-5828, E-mail :konip@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